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4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장기복무 복무군인을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추가(안 제9조제1항 제18호 신설).

나. 문구 정비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(안 제9조제1항제11호 등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3. 5. ~ 3. 2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익승 (☎2133-4237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

역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
18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

제대군인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(3월~10월) :”을 “(3월~10월)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월) :”을 “2월):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무료 관람)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	제9조(무료 관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	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
12. ~ 17. (생 략)	12. ~ 17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8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
18. · 19. (생 략)	19. · 20. (현행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사용기간) ①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2조(사용기간) ① ----- ----- -----.
1. 하절기(3월~10월) : 09:00부	1. ----(3월~10월): -----

터 20:00까지	-----
2. 동절기(11월~다음해 <u>2월</u>) :	2. ----- <u>2월</u>): -
09:00부터 19:00까지	-----
②・③ (생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(무료관람)제1항제18호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가능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(관람료)제1항제18호를 변경·신설함에 따라 관련 세입이 감소할 수 있음
 - 현행 동 조례 제8조(관람료)제1항제2호¹⁾에 따라 특별전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어 본 개정안 제9조(관람료)제1항제18호를 변경·신설 시 관람료 수입 순감소가 예상됨
 - 따라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최근 개최한 특별전²⁾ 통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려 하였으나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문의결과 무료관람 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, 단순 추정 시 실제 무료관람객 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가 곤란함

구분	종 류	관람료	관련 조례	비고
1	상설전	무료	현행 제8조(관람료)제1항제1호	
2	소장작품 기획전	무료		
3	기획전	현행 무료(심의결과)	현행 제8조(관람료)제1항제2호	
4	특별전	일정금액 관람료		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익승(☎2133-4237)

1) 제8조(관람료)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. 2. 기획전과 특별전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무료관람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.

2) 2023. 4. 20. ~ 2023. 8. 20. 《에드워드 호퍼:길 위에서》 성인 관람료 17,000원(얼리버드 성인 2인 20,000원) 등